

참고자료:

- [1] European eGovernment Awards 2005 Proceedings - eEurope award winners, 2005. 11. 24
- [2] <http://www.e-europeawards.org>
- [3] <http://www.eGov.dk>
- [4] <http://www.kadaster.nl>
- [5] <http://www.oes.dk>
- [6] <http://www.revenue.ie>
- [7] <http://www.ZUS.pl/english.pdf>

영국의 가입자선로 제공 대가에 대한 상한 설정

공정경쟁연구실 주임연구원 오기석
(T. 570-4243, ksoh@kisdi.re.kr)

1. 개 요

영국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은 도매접속시장(Wholesale local access market)에서 제공되는 가입자선로 제공대가의 상한을 설정하여 2005년 11월에 발표하였다. Ofcom은 도매접속시장에 대한 경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지배력(significant market power) 보유 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규제 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도매접속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에 부과된 주요 규제 의무 중의 하나는 가입자선로를 세분화하여(LLU: local loop unbundling) 제공하도록 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는 제공 대가의 산정이다. 특히, Ofcom은 가입자선로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대가에 대해 상한을 부과하였는데,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위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입자선로 제공 대가의 산정 경과

Ofcom은 도매접속시장에 대한 경쟁평가를 수행하여, 2004년 12월 헐(Hull) 지역을 제외한 영국전역의 도매접속시장에서 BT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헐(Hull) 지역에서는 Kingston이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Ofcom은

해당 시장에서 BT와 Kingston에게 LLU 서비스 및 병설(co-location)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LLU는 지배적 사업자의 가입자선로(local loop)를 물리적으로 절체하여 이를 다른 경쟁 사업자의 망에 연결하는 것이다.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로 하여금 LLU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사업자가 기존사업자로부터 가입자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LLU 서비스의 제공은 광대역 및 음성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Ofcom은 2004년 12월에 LLU 제공대가의 상한을 설정하면서 가입자선로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fully unbundled rental charge)의 상한 설정은 연기하였다. 이는 가입자선로 제공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포설 및 유지비용인데, 이에 대한 원가산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2005년 8월 18일 가입자망 가치산정(valuing copper access)이라는 제목으로 가입자망에 대한 원가산정 방안 등을 발표하였으며, 한편, 2005년 8월 1일 BT가 자발적으로 가입자선로 제공대가를 £105.09에서 £80.00으로 인하하였다. 그러나 Ofcom은 초과 수입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BT의 가격 인상을 방지하고 확실하고 투명한 요금설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한 설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후 Ofcom은 가입자선로 제공 대가의 상한을 설정하고 2005년 9월 7일에 의견수렴을 위해 자문서(consultation)를 발표하였다.

3. 가입자선로 제공 대가 상한 설정

Ofcom이 2005년 11월에 가입자선로 제공대가의 상한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초과 건설 비용의 배제를 제외하고는 지난 9월의 자문서와 동일하다. Ofcom은 가입자선로 제공대가의 상한을 £81.69로 설정하였으며, 200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Ofcom이 가입자선로의 대가산정을 함에 있어서 적용한 접근방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Ofcom은 BT 규제회계로부터 획득한 '04/'05년 회계연도의 비용 자료를 사용했다.
- 2006년 1월부터 상한이 적용됨에 따라, 원가자료와 규제적용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해 '05/'06년 원가자료를 추정하였다.
- 1.5%의 효율성 요소가 '05/'06년 운영비용에 반영되었다.
- 투자보수율은 10%가 적용되었다.
- 짧은 회선이 광대역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D축 구리선의 원가를 16% 삭감하여 적용하였다.
- 가입자선로를 위해 신규로 설치된 drop wire의 원가는 LLU, WLR(whole line rental)

- 과 BT의 소매서비스간의 일관성 달성을 위해 임대료를 통해 회수되도록 하였다.
- 주거 소매 요금 등을 통해 이미 회수된 원가를 BT가 이중으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 BT가 자사 고객과 WLR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한 초과 건축 원가를 제외 하였다.

참고자료:

- [1] Ofcom, Local loop unbundling: setting the fully unbundled rental charge ceiling and minor amendment to SMP conditions FA6 and FB6, 2005. 11. 30

영국의 PRS(Premium Rate Service) 규제 현황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박민준
(T. 570 - 4345, meenjoon@kisdi.re.kr)

1. 개 요

지난 9월 영국의 통신·방송규제기구인 Ofcom에서는 우리나라에서 '060'번호로 알려진 통신서비스와 유사한 PRS(Premium Rate Service)를 규제하기 위해서 최근 법률 개정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060' 번호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Ofcom의 보고서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Ofcom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유선통신만 국한되었던 PRS에 대한 규제 제도 및 소비자 보호 법안을 이동통신과 모뎀을 이용한 인터넷전화 등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통신수단까지 확대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PRS제공자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배 경

Ofcom의 보고서는 2003년 영국통신법안(Communication Act)의 120절에서 PRS(Premium Rate Service)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Ofcom 규정의 수정을 제안하고 있다.

가. PRS(Premium Rate Service)

PRS는 우리나라와의 '060'번호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이다. PRS는 유선전화나